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법령 및 규정집

2012. 4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순서

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2. 누에 장려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3. 대한잠사회 소속단체 정관

 - (사)대한잠사회 정관
 - (사)한국양잠연합회 정관
 - (사)한국상묘협회 정관
 - (사)한국잠종협회 정관
 - (사)한국생사수출입조합 정관

4. (사)대한잠사회 잠업사업자금 규정

 - 잠업사업자금 운용관리 규정
 - 잠업사업자금 운영위원회 운영요령
 - 잠업사업자금 용자요령

5. (사)대한잠사회 임원 선거규약
6. 원원잠종 생산 및 검사 관련법규(농진청)

**기능성 양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26호, 2009.5.27]</p>	<p style="text-align: center;">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22호, 2009.11.28]</p>
<p>제1조(목적)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p> <p>가.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 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산업</p> <p>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 소재 등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산업</p> <p>2. "기능성 양잠농가"란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p>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작목의 육성·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성 양잠산업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26호, 2009.5.27]</p>	<p style="text-align: center;">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22호, 2009.11.28]</p>
<p>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방안 6.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③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에 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 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조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p>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기능성 양잠산업의 생산기반 유통 가공 등의 현황 및 국제 동향

<p>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26호, 2009.5.27]</p>	<p>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22호, 2009.11.28]</p>
<p>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능성 양잠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교육사업·체험사업의 실시 3. 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작목(作物)작부(作付) 등에 관한 상담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임한 사업 <p>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및 보급 현황 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 인력의 규모 5.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26호, 2009.5.27]</p>	<p>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22호, 2009.11.28]</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양잠산물 가공시설 2.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3.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p>제10조(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능성 양잠농가로 하여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4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p> <p>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법률 제9726호, 2009.5.27></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누에 장려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누에 장려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시행 2009.8.24]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107호, 2009.8.24, 폐지제정]

종자생명산업과, 02-500-203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누에장려품종(이하 "장려품종"이라한다)의 지정에 관한 절차와 누에씨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누에씨"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원누에씨 : 누에품종 육성단계를 거치고 품종고유의 성상을 갖춘 누에씨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원누에씨 : 원원누에씨로부터 증식한 누에씨를 말한다.
3. 보급누에씨 :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배형식에 따라 원원누에씨 또는 원누에씨로부터 생산된 누에씨를 말한다.

제3조(누에장려품종지정심의회 설치 및 기능)

- ① 장려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누에장려품종지정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장이 되고,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된다.
 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감사관총부장
 2.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잠업단체의 대표 3인이내
 3. 잠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 ④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⑤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장려품종의 지정과 폐기)

-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원의 시험성적과 기술검토 의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장려품종을 지정하거나 폐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품종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누에고치 생산용 누에품종

가. 알깨기비율은 90%이상일 것.

나. 번데기되기 비율은 대조품종보다 높거나 최근 지정된 3개 장려품종의 평균보다 많을 것

다. 고치생산량은 대조품종보다 많거나 최근 지정된 3개 장려품종의 평균보다 많을 것

라. 고치풀림새는 70%이상이거나 풀림새길이가 최근 지정된 3개 장려품종의 평균보다 긴 것

2. 특수용도 누에품종

가. 특정실용형질이 우수하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것

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품종을 폐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시험결과 장려품종의 성상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제2항의 기준에 미달되어 장려품종으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3년이상 계속적으로 농가보급실적이 현저히 낮을 때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5조(장려품종 지정에 대한 시험)

① 장려품종 지정에 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준한다.

1. 장려품종 지정을 위한 성장조사

2. 인공사료에 대한 적합성 검정

② 시험장소 및 방법은 농업과학기술원장이 정한다.

③ 시험시기는 춘기용 품종은 춘기성적을 하추기용 품종은 추기성적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6조(시험성적 검토) 종합 정리하여 장려품종 지정 및 폐기에 대한 추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장려품종지정 및 폐기절차)

① 농업과학기술원장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품종 지정 및 폐기에 대한 추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장려품종 지정 및 폐기심의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접수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려품종으로 지정 또는 폐기를 결정 시달한다.

제8조(누에씨의 안전한 보급 등)

- ① 누에씨 생산 및 검사를 관장하는 행정기관(국립잠사기관)또는 도지사의 소속기관(도잠사기관)은 그 생산한 원원누에씨 또는 원누에씨를 누에씨 생산업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누에 생산업자의 누에씨 검사신청이 있으면 무료로 누에씨 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누에씨 검사기준은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며 검사방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고시에 의한다.

제9조(누에씨의 수급계획 및 실적보고)

- ① 도지사는 다음해의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 생산계획량과 누에사육 계획량을 당해 연도의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 생산실적을 매년 12월말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해의 원원누에씨의 품종별 소요량을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농업과학기술원장은 매년 1월말일까지 당해연도의 원원누에씨생산계획량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생산계획량을 기초로하여 누에사육예상량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누에씨수급계획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농업과학기술원장은 전년도 원원누에씨생산실적을 매년 1월말일까지, 원원누에씨 공급실적은 매년 4월말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누에씨생산 기술지도) 농업과학기술원장은 누에씨 생산기관이나 누에씨 생산업자를 대상으로 누에씨생산 및 검사에 대한 지도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1조(기타사항)

- ① 장려품종 지정 및 폐기시험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규칙"에 불구하고 이 요령 범위내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려품종의 지정·폐기·관리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업과학기술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이 요령 범위내에서 우량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업과학기술원장과 도지사가, 보급누에씨의 농가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 107호, 2009.8.24>

-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2년 7월 1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 ③ (누에장려품종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누에장려품종은 이 요령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④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농림부훈령 제990호(1999.7.14)는 이를 폐지한다.

대한잠사회 소속단체 정관

定 款

1946. 7. 12

社團法人 大韓蠶絲會

(사)대한잡사회 정관

1946. 7.12	제 정		
1970. 3. 9	개정승인(농 립 부 기획	1732	- 806)
1971.10.19	개정승인(농 립 부 법무	816	- 1077)
1973.12.28	개정승인(농 수 산 부 법무	816	- 4503)
1976. 5. 4	개정승인(농 수 산 부 법무	816	- 1428)
1978. 2. 8	개정승인(농 수 산 부 법무	816	- 238)
1978. 3.22	개정승인(농 수 산 부 법무	816	- 494)
1979. 1.13	개정승인(농 수 산 부 법무	816	- 65)
1980. 1. 7	개정승인(농 수 산 부 법무	125.1	- 1)
1980.12. 4	개정승인(농 수 산 부 법무	816	- 5258)
1981. 1.23	개정승인(농 수 산 부 법무	816.4	- 143)
1986. 2.14	개정승인(농 수 산 부 잠업	27170	- 186)
1994.12.15	개정승인(농림수산부 잠특	51230	- 450)
1996. 5.14	개정승인(농림수산부 원특	51070	- 16)
1998.12.22	개정승인(농 립 부 과획	51230	- 548)
1999.12. 7	개정승인(농 립 부 과획	51230	- 708)
2005. 3.25	개정승인(농림부 과수화훼과		- 1023)
2008. 3.21	개정승인(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팀		- 165)
2009. 6.12	개정승인(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 456)
2010. 4. 9	개정허가(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 1279)
2011.11.11	개정허가(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1732)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회는 사단법인 대한잡사회라 칭한다.

제2조(사 무 소)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둔다. (2011.11.11개정)

제3조(목 적) 이 회는 잡사업의 진흥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 고) 이 회에서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96.5.14개정)

제2장 사 업

제5조(사 업) 이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잠사업의 기술보급, 경영지도, 지원 등 잠사업진흥을 도모하는 사업
2. 잠업사업자금의 운용관리 ('98.12.22개정)
3. 누에인공사료의 생산 공급 및 기술교육사업
4. 잠사지의 발행과 잠사업에 관한 홍보 및 통계·조사자료 등의 발간보급 사업
5. 잠사업에 관한 국제교류, 협력 및 잠사류의 수출입관련 사업
6. 잠사업 운영상 필요한 각종알선 및 판매사업
7. 잠상산물의 생산 및 구매, 가공, 판매, 유통 등에 관한 사업 ('96.5.14신설)
8. 건물, 토지의 유지관리와 부동산중 일부의 임대사업
9. 잠사업에 관한 문화보존 및 잠사박물관 운영사업과 잠사관련 관광농원, 잠사관련 체험시설 설치 운영사업 (2005.3.25개정)
10. 누에동충하초의 종균생산보급 및 재배, 수매, 유통 등에 관한 사업 ('98.12.22신설)
11.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98.12.22개정)
12.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구성) 이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양잠농가로 구성 한다. ('99.12.7개정)

1. 사단법인 한국양잠연합회 (2011.11.11개정)
2. 사단법인 한국상묘협회
3. 사단법인 한국잠종협회
4. 사단법인 한국생사수출입조합

제7조(가입절차) 이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이회 회원은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회 업무수행에 의한 제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이회의 회원은 회비부담,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제10조(회원제재) 회원이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회원 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재 또는 제명 한다.

제11조(탈 퇴) 회원의 탈퇴는 회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으며 탈퇴 후는 제 권리를 상실 한다. ('94.12.15개정)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임 원)

① 이 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96.5.14개정)

1. 회 장 1인
2. 비 상 임 이 사 8인 이내 (2009.6.12개정)
3. 감 사 (비 상 임) 2인

②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008.3.21개정)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 한다. (2005.3.25개정)

② 회장은 회원 외에도 선임 할 수 있다.

③ 비상임이사는 8인 이내로 구성하며, 비상임이사 8인 중 4인은 사단법인 한국양잠 연합회장, 사단법인 한국상모협회장, 사단법인 한국잠종협회장, 사단법인 한국생사 수출입조합 이사장이 당연직이사가 되며 3인은 양잠대표로 한다. (2009.6.12개정)

④ 비상임이사중 1인은 잠업에 관한 학식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회장이 추천 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법인등기에 등재는 하지 아니 한다. (2009.6.12개정)

⑤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약으로 정한다. (2005.3.25신설)

⑥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가 임원선거규약에 의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업종 단체에서 업종대표 비상임이사를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05.3.25신설)

⑦ 고문은 총회에서 추대 한다. ('96.5.14신설)

제14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호선된 자가 회장이 선출될 때 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2011.11.11개정)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운영상 중요사항을 의결 집행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이 회 업무 및 재산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011.11.11개정)
- ⑤ 감사와 고문은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책임)

- ① 이 회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이 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② 이 회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회나 타인에게 손실을 가한 때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해임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에게 해임 의결에 앞서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2011.11.11개정)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총회일 전에 만료 될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 개최되는 총회의 종료일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99.12.7개정)
- ②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의 보수 및 급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18조(직원의 직무)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직제에 소정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2011.11.11개정)

제5장 회 의

제19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

- ① 이 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 의 2종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의 목적 및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소집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한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 한다. ('98.12.22개정)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 한다.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 한다. ('96.5.14개정)

- | | |
|---------------------|-------------------|
| 1. 양 잠 농 가 대의원 | 13명 |
| 2. 상묘생산업자 대의원 | 3명 |
| 3. 잠종생산업자 대의원 | 3명 |
| 4. 제사 및 생사수출입업자 대의원 | 3명 (2011.11.11개정) |
| 계 | 22명 |

제21조(대의원 선임)

① 대의원은 각 업종별 단체에서 선임한 인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 임기만료 후라도 새 대의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 한다. ('96.5.14개정)

② 대의원은 각 업종별 단체의 회원으로서 그 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잠업사업자금의 융자금 상환기일이 6개월 이상 초과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2010.4.9개정)

③ 선임된 대의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거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타의 경우로 결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사업별 단체에서 보선하며 이 경우 새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96.5.14신설)

제22조(총회소집통지) 회장은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정관의 변경, 개정 및 기본재산의 운영 ('99.12.7개정)
2. 임원선임, 해임 및 임원의 보수
3. 회비분부 징수방법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5. 업무실적 및 결산보고
6. 대의원 선거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이 회의 해산 및 이에 관련된 사항
8. 기타 회장이 이 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직제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99.12.7개정)
2. 총회 부의사항
3. 자금의 차입
4. 잠사업 개량발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수지예산의 항간전용 및 예비비 사용 및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98.12.7개정)
6. 기타 회장이 업무 수행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회의성립 및 의결)

- ① 총회는 재적 과반수로, 이사회는 재적 3분의 2이상으로 성립하며,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 한다. (2010.4.9개정)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②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미결인 때에는 재차 표결에 부하되 다시 미결인 경우에는 그 의안을 폐기 한다.

제26조(의사의 특례)

① 총회는 제22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의안에 한하여 심의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이사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 이외라도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간략사항은 서면 의결 할 수 있다.

제27조(회의의 대리) 대의원 및 이사는 동일회의 구성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권은 1인에 한 한다.

제28조(승인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정관의 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0.4.9개정)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 이 회의 기본재산은 회비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타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1조(경비 및 회비)

① 이 회의 자산은 기본금, 회비찬조금 부대업무에서 발생한 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96.5.14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양잠연합회 회비 (2011.11.11개정)
2. 한국상묘협회 회비 (2011.11.11개정)
3. 한국잠종협회 회비 (2011.11.11개정)
4. 한국생사수출입조합 회비 (2011.11.11개정)
5. 기 타 회비

제32조(사업계획 등)

- ① 이 회의 사업실적, 수지결산, 사업계획, 수지예산은 회계년도마다 작성하되 매년 2월말까지 총회에 보고 또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05.3.25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나.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다.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2010.4.9개정)

제33조(특별회계) 이 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제34조(준예산) 회계년도 개시 후 총회에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심의 의결 될 때까지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3개월분에 해당하는 경비를 전년도 예에 준하여 준예산으로 집행하고 그 기간 내에 본예산을 심의 확정 하여야 한다. ('99.12.7개정)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35조(해산)

- ① 이 회의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이 해산을 결의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010.4.9개정)
- ② 이 회 해산시의 재산은 회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에 한하여 처분하되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96.5.14개정)

부 칙

제36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수산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37조(경과조치) 1980년도 정기총회는 정관 제19조 규정에 불구하고 12월중에 개최할 수 있다

제38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발효한 날로부터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은 잔여 기간에 불구하고 대의원 자격을 상실 한다.

제39조(경과조치)

- ① 이 정관 개정당시의 회장은 과도기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잔여임기까지 회장의 직무를 수행 한다.
- ② 이 정관 개정당시의 임원은 잔여임기에 불구하고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 한다.

제40조(경과조치)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정하는 대의원 선거규정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제정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

제41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94.11.29)

제42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 한다. ('96.5.14)

제43조(대의원 선거규정 폐기) 1980. 12. 18 제정된 대의원 선거규정은 정관개정과 동시 폐기 한다. 단, 제18대 대의원은 제21조의 개정된 대의원 선임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96.5.14)

제44조(경과조치)

- ①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2003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 ② 1998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2002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001년 2월 정기총회 까지로 한다.
- ③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 한다. ('99.12.7)

제45조(경과조치)

- ①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 한다. (2005.3.25)
- ② 이 정관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 한다. (2008.3.21)
- ③ 이 정관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 한다. (2009.6.12)
- ④ 이 정관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 한다. (2010.4.9)
- ⑤ 이 정관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 한다. (2011.11.11)

定 款

1998. 4. 18

社團法人 韓國養蠶聯合會

(사)한국양잠연합회 정관

1998. 4. 18. 제정승인(농림부 과화 51070-25)

2002. 3. 13. 개정승인(농림부 과화 51070-62)

2009. 4. 1. 개정승인(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웨탐-12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회는 한국양잠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회는 양잠농가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 양잠주산지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구역) 이회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5조(사업) 이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량잠견 및 양잠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기술의 보급
2. 양잠산물의 생산 및 구매, 가공, 판매, 유통등에 관한 지원 및 알선사업
3. 잠업진흥을 위한 연찬회 및 우수양잠농가 표창
4. 생산비 조사 및 적정 가격결정에 따른 대책추진
5. 전업양잠농가육성 및 양잠조직 활성화
6. 양잠관련자재의 알선 및 보급사업
7. 잠업장려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의 추진
8.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6조(회원) 이회는 양잠영농을 하는 자가 회원이 된다.

제7조(입회) 이회는 입회코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거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 이회의 회원은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무) 이회의 회원은 이회의 경비부담, 이회의 정관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10조(제재 또는 제명) 회원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된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제재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탈퇴) 이회에 입회한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일의로 탈퇴 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임원) 이회는 다음 임원과 직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 사 10인 이내 (회장.부회장 포함)
4. 감 사 2인
5. 사무직원 약간명

이회는 총회의결에 의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 이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명예직으로 한다.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이회 임원은 회의 사업추진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직무를 갖는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전반을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회장이 직무대행중 유고시는 이사 중에서 선임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 운영의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이 회 사무집행사항 및 재산을 감사한다.
5. 고문은 임원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책임) 이 회의 임원은 법령, 정관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이 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회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보궐선거) 임원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한으로 한다. 단, 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정관에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원의 보수) 임직원의 보수 및 급여는 별도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직원의 임무) 직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 의

제20조(회의) 이 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1조(총회구성) 총회는 군양잠총대가 선출한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각도 잠업세 변화에 따라 대의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1. 경 기 도 1인
2. 강 원 도 1인
3. 충 청 북 도 2인
4. 충 청 남 도 3인

5. 전라북도 4인
6. 전라남도 3인
7. 경상북도 4인
8. 경상남도 3인

대의원은 각 시·군 양잠농가대표(총대)가 모여 선출한다.

제22조(총대) 총대는 군단위 1인으로 하되 회원 6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자라야 한다. 다만 공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양잠농가대표로 기히 선출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4조(총회의 소집통보) 총회는 개최일 1주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부의사항) 총회 및 이사회는 의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회 부의사항 >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거
3. 경비 및 회비부과 및 징수방법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5.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사회에 부의사항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수지예산에 대한 추가 개정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사업자금의 차입
5.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업무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26조(의결) 총회와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로 성립하고 이사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정관의 변경, 회원의 징계, 제명은 재적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회의의 의장)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8조(의안처리) 총회에서는 제25조에 의한 사전 통지한 의안이외에 대의원 발의안건에 대하여도 심의처리 한다.

제29조(서면결의) 이사회는 의결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가름할 수 있다.

제30조(대리권) 대의원 및 임원은 동일회의구성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기부금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이 회의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3조(예산집행) 예산이 확정될 때 까지는 전년도 수준에 의하여 가집행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소급 조정 집행한다.

제34조(예산이월)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된 잉여금 또는 부족금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에 이월한다.

제 7 장 해산 및 청산

제35조(해산 및 청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산은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에 한하여 처분하되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제36조(시행)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7조(경과조치)

- ① 2009년도 3월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회장은 제 17조(보궐 선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12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 ② 이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定 款

1961. 11. 21

社團法人 韓國桑苗協會

(사)한국상묘협회 정관

1961.11.21	제정승인 (농 정 제	4.145호)
1962. 1.25	개정승인 (농 정 제	833호)
1963. 1.22	개정승인 (농 업 잠	1123.16)
1966. 3.11	개정승인 (농 업 잠	1123.14-649)
1973. 5.16	개정승인 (법 무	816-1725)
1976. 4 .8	개정승인 (법 무	1816-1011)
1976. 8.14	개정승인 (법 무	816-2426)
1979. 1.29	개정승인 (법 무	816-169)
1986. 2.14	개정승인 (잠 업	27170-186)
1988. 8.10	개정승인 (잠 업	27170-660)
1989. 2.24	개정승인 (잠 업	27170-165)
1993.12.10	개정승인 (잠 특	51230-98)
2001. 7. 6	개정승인 (과 화	51070-227)
2007. 3 .6	개정승인 (과수화훼	9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상묘협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도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는 경상남도, 제주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관할로 한다.

제 3 조 본회는 상묘생산의 개량발전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잠사업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 4 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우량상묘의 생산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2. 상묘의 생산비 조사 및 적정가격 협정의 건의
3. 상묘 및 상묘생산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판매 및 알선
4. 상묘생산자금의 융자 및 알선
5.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 3 장 회 원

제 5 조 본회의 회원은 상묘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년 삼만주이상 생산하는 자로 한다. 단, 상묘생산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은 자는 본회를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6 조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금을 첨부하여 입회신청서에 각도 지부장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면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제 7 조 회원의 입회금은 회원 매인당 이백만원으로 한다.

제 8 조 본회의 회원은 임원, 대의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본회 사업수행에 의한 제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본회 회원은 본회의 경비부담, 본회의 정관 및 제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10 조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제 11 조 본회는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임의로 탈퇴 할 수 있으며 제명 또는 탈퇴할 때에는 기납한 회비에 대한 반환청구권 및 제권리를 상실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 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회의 2종으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의 3분의 1 또는 이사의 과반수가 총회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그 소집을 회장에게 청구 한 때,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3 조 총회와 이사회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이사회회의결사항은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총회 부의사항 >

1.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선거
2.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추가예산 포함)
4. 업무실적 및 결산보고
5. 본회의 해산 및 이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사회회의 부의사항 >

1. 직제 및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수지예산의 개정
4. 회원의 포상 및 징계 또는 제명
5. 기타 업무집행상 중요한 사항

제 14 조 총회는 다음에 기재하는 대의원으로서 구성한다. 대의원수는 각도 2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 조 대의원은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6 조 총회 및 이사회회의 개최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행한다. 단, 가부 동수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미결된 의안은 재차 표결에 부하여 미결된 경우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단, 정관의 변경은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17 조 총회의 의결중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8 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비에 당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과 부회장이 유고할 시에는 이사중에서 선출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장 임원과 직원

제 19 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2명 이내
3. 이 사 10명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4. 감 사 2명 총회 의결에 의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20 조 회장, 이사, 감사는 회원중에서 부회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하되 각도마다 이사 1명씩을 당해도 회원이 선출토록 한다. 단, 전무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회원외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

제 21 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산을 감사한다.고문은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2 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전에 만료될 시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때 까지 기 임기를 연장한다.

제 23 조 임기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24 조 본회의 직원은 직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제 25 조 직원은 상사의 지휘를 받아 직제에 규정된 사무와 기술에 종사한다.

제 6 장 회 계

제 26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 제 27 조 본회의 기본금은 입회금, 기부금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타의 수입으로써 이를 조성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운영한다.
- 제 28 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와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 29 조 본회의 수지예산은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년도 개시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수지결산은 차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0 조 본회의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총회는 3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가예산을 결정하고 그 기간내에 총예산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제 31 조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 장 해산과 청산

- 제 32 조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결의로서 해산할 수 있다.
- 제 33 조 본회가 해산할 때에 총회는 청산인 약간명을 선출하여 청산을 완료하고 청산인은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제 34 조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 35 조 1973년도에 한하여 회장은 회원외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 단,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 제 36 조 정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 12월 정기 총회에서 기 선임된 이사의 정원은 1987년 12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제 37 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定 款

1961. 12. 6

社團法人 韓國蠶種協會

(사)한국잠종협회 정관

1961.12. 6 제정승인 (농 정 제 4502 호)
1964. 4.17 개정승인 (농업잠 1123.16-902)
1973. 5.15 개정승인 (법 무 816-1724)
1976. 4.29 개정승인 (법 무 816-1368)
1979. 6.22 개정승인 (법 무 816- 28)
1982. 1.15 개정승인 (법 무 125.1- 1)
1986. 2.14 개정승인 (잠 업 27170-186)
1989. 2.24 개정승인 (잠 업 27170-165)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잠종협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도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는 경기도, 대전직할시는 충청남도, 대구직할시는 경상북도, 부산직할시는 경상남도, 제주도와 광주직할시는 전라남도 관할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잠종업의 개량발전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잠사업의 진흥에 부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본회는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우량잠종제조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시찰강화(視察講話) 강습회(講習會)의 개최
2. 잠종의 생산비조사 및 적정가격의 건의
3. 잠종 및 잠종제조에 필요한 물자의 공동구입 및 수출판매 알선
4. 잠종제조자금의 공동융자 및 알선
5. 농수산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잠종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단, 소관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금 貳萬원을 납부한 입회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본회사업수행에 의한 제이익을 정수(亭受)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본회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조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는 회원이 제명 또는 탈퇴할 때에는 기납한 입회금과 본회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 및 제권리를 상실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한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이사(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제12조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원의 3분의1 또는 이사의 과반수가 총회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그 소집을 회장에게 청구한 때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1 이상 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와 이사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이사회 의결사항은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총회 부의사항 >

1.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선거
2. 회비분부 및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4.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 부의사항>

1. 직제 및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수지예산의 변경
4. 회원의 포상 및 징계 또는 제명
5. 기타 업무집행상 중요한 사항

제14조 총회 및 이사회회의 개의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미결인 의안은 재차 표결에 부하여 미결된 경우에는 그 의안은 폐기한다. 단, 정관의 변경은 재적과반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중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은 총회의결확정후 1월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와 이사회회의 의장은 회장이 차에 당하고 회장이 유고할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과 부회장이 유고할 시에는 이사중에 선출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 5 장 임원과 직원

제17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명
2. 부 회 장 2 명 이내
3. 상무이사 1 명
4. 이 사 12 명 이내 (회장,부회장,상무이사 포함)
5. 감 사 2 명

제18조 임원은 회원중에서 총회에 의해 선임하되 각도마다 이사 1명씩을 당해도 회원이 선출하며 그 도 지부장을 겸임한다. 단, 상무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회원외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총리(總理)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상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정한 회무(會務)를 장리(掌理)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산을 감사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 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 본회의 직원은 직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23조 직원은 상사의 지시를 받아 직제에 규정된 사무와 기술에 종사한다.

제 6 장 회 계

제24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5조 본회의 기본금은 입회금, 기부금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타의 수입으로써 이를 조성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운영한다.

제26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와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7조 본회의 수입예산은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년도개시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수지결산은 차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본회의 예산이 부득기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총회는 3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가예산을 결정하고 그 기간 내에 총예산을 심의결정 하여야 한다.

제29조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 장 해산과 청산

제30조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이 해산을 결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31조 본회가 해산할 때 총회는 청산인 약간명을 선출하여 청산을 완료하고 청산인은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32조 본 정관 제17조 및 제18조의 제정에 관하여 1984년도 정기총회에서 기선임된 이사의 정원은 1987년도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定 款

1999. 4. 26

社團法人 韓國生絲輸出入組合

(사)한국생사수출입조합 정관

1999. 4. 26. 제정승인(농림부. 과화51070-34호)

2001. 7. 6. 개정승인(농림부. 과화51070-277호)

2008. 3. 21. 개정승인(농수산식품부. 과수화훼팀-165호)

2010. 5. 17. 개정허가(농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167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합은 사단법인 한국생사수출입조합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잠사(蠶絲) 수출진흥을 위한 국가시책에 순응하여 잠사의 공정한 수출입거래를 확립하여, 해외시장의 개척, 잠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해외 신용도를 높임으로써 잠사수출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조합원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두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출장소 또는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취급품목) 본 조합에서 잠사라 함은 잠견(蠶繭)으로부터, 제조 가공된 생사(生絲), 옥사(玉絲) 및 견연사(絹撚絲)를 말한다.

제5조(공고) 본 조합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사 업

제6조(사업) 본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잠사수출입 진흥에 관한 건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이 생산한 취급품목의 대행수출입, 판매 또는 정부가 지정한 수출추천 및 양허, 할당관세 추천 및 원거리 소재의 추천신청자가 추천서 송부 등의 제역무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의 역무 제공.
3. 취급품목에 대한 품질향상 및 포장의 개선, 조사, 연구 및 기술향상과 해외시장 조사, 선전에 관한 사항

4. 취급품목에 대한 국내외 거래의 협정에 관한 사항
5. 잠사가격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을 위한 알선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분쟁중재 및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
8. 수출입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전각호의 부대(附帶)사업

제 3 장 조 합 원

제7조(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의 조합원은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 조합의 취급품목을 생산, 수출, 판매, 사용하는 업자로 한다.

생사, 옥사 또는 견연사의 생산시설을 임차하거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무역등록업자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가입절차) 본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제7조의 자격에 필요한 증명서를 첨부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사회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가입시켜야 한다.

제9조(가입금)

- 1 조합원은 본 조합에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가입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10조(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본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탈퇴한다.

1. 임의(任意)탈퇴
2.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
3. 제명

제11조(비임의 탈퇴) 조합원이 본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이를 제재(制裁) 또는 제명한다.

제12조(탈퇴조합원의 자산처리) 조합원이 본 조합을 탈퇴할 때에는 기금 등으로 적립된 회비 및 출자금에 대하여는 탈퇴 조합원에게 정산하여 반환한다.

제13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본 조합에 대하여 다음 권리가 있다.

1. 본 조합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본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임원의 설명을 구하고 서류 및 장부를 열람하는 권리
3. 본 조합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제14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본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총회, 이사회 제(諸)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준수
2. 조합비 및 경비의 부담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15조(임원)

가. 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2명 이내
3. 전무 1명
4. 이사 8명 이내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 포함)
5. 감사 2명

나. 이사장이 업무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 고문(顧問)을 추대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선임) 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중 이를 선임한다. 다만, 이사장과 전무는 조합원 이외에서도 선임할 수 있으며, 전무는 이사장의 제청(提請)이 있어야 한다.

제17조(임원의 권한 및 직무)

가.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관장(管掌)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의장이 된다.

나.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 전무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라. 감사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을 감사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년도 도중 임기 만료 시에는 차기 정기총회까지 연장한다.

제19조(임기보선)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선을 행한다. 전문(前文)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퇴임) 본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당해기업체의 대표직에서 퇴임하였을 때에는 본 조합의 임원직도 자동 퇴임된다.

제21조(임원의 의무) 본 조합의 임원은 법령 정관 규정 또는 총회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본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직원의 임면) 본 조합의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이를 임면(任免)한다. 직원은 상사의 지휘를 받아 담당사무에 종사한다.

제23조(임직원의 급여) 비조합원인 임원과 직원은 보수 급여 및 수당과 퇴직수당을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 받는다.

제 5 장 조 직

제24조(직제, 출장소 및 사무소의 설치·개폐) 본 조합의 직제, 출장소 및 사무소의 설치 또는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규제위원회) 수출입거래의 질서 확립 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규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특별위원회) 사무집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장 회 의

제27조(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마감 후 2월 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소집의 청구를 할 때

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 할 때

제30조(총회소집통고) 총회는 개최일 1주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을 기재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4.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5.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한 자금조성에 관한 사항
6. 조합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총회성립 및 의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여 출석조합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다만, 정관변경은 재적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장유고시의 의장선출) 이사장, 부이사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34조(총회의결권의 대리행사) 조합원은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이사 2인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 본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써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7조(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총회부의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3. 수출입법래에 관한 특수사항

4. 수지예산의 추가개정
5.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위임사항
7. 기타 업무수행 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타 조항의 준용)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9조(회계년도) 본 조합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0조(경비 및 회비)

1. 본 조합의 자산은 회비 및 부과금과 기타수입금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한다.
2. 본 조합원의 경비는 회비와 부과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와 부과금의 부과기준과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총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41조(가예산) 본 조합의 경비 수지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는 3개월 이내의 해당 가예산을 결정 시행하고 그 기간 내에 총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2조(특별회계) 본 조합은 총회의 의결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준비금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 경리 할 수 있다.

제 8 장 해산 및 청산

제43조(해산) 본 조합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4분의 3이상의 의결로써 해산할 수 있다. 해산의결 할 때에는 청산인 약간명을 선출하여 청산을 완료하고 청산인은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 및 부채처리) 본 조합의 청산완료후의 잔여재산 또는 부채는 해산 총회에서 특별의결이 없는 한 해산시의 조합원의 가입금 및 거출금비율에 의거 분배 또는 분담한다.

제 9 장 주무관청의 허가 및 보고

제45조(주무관청의 허가사항) 다음 사항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제46조(주무관청에의 보고사항) 다음 사항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결과
2. 임원의 선임 또는 개선
3. 조합원의 변경사항
4. 조합원의 수출계획 및 실적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6.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7.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8. 조합원을 위한 융자알선에 관한 사항
9. 외국수출입업자와의 장기협정
10. 외국수출입업자와의 수출거래조건에 관한 계약
11.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주재원 및 해외시장 조사원의 임용

부 칙

제47조(시행)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대한잠사회 잠업사업자금 규정

잠업사업자금 운용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잠업기반의 유지 및 양잠농가의 소득안정, 잠업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잠업사업자금 (이하“자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재원)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잠업법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잠업진흥기금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및 채권·채무
2. 잠사류의 수출입업자 및 단체의 출연금
3. 기타 자금의 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자금의 운용·관리)

- ① 자금은 대한잠사회장이 관리하되, 이 규정이 정한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잠업사업자금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잠사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한잠사회 이사
 2. 농림부 잠업담당 공무원 1인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계인사 1인
- ④ 자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⑤ 자금관리자는 매년 12월중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때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운용계획
- ⑥ 자금은 당해 자문에 의한 사업의 경영실적 및 재정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입·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이동 상황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자금관리자는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자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결산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⑧ 자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의 용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사업
2. 잠업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
 - 가. 누에고치 가격보전을 위한 장려사업
 - 나. 잠업기술보급 및 관련 지도사업
 - 다. 누에인공사료 보급, 누에씨고치 생산장려금 지원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
 - 라. 잠업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개발 관련사업
 - 마. 건조누에 가격안정을 위한 구매유통사업
 - 바. 잠사업 홍보 관련사업
 - 사. 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제5조(자금의 용자 및 회수)

- ① 자금관리자는 잠사류의 생산, 구매, 수집, 판매유통, 가공 및 수출등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할 수 있다.
- ② 잠사류의 생산, 구매, 수집, 판매유통, 가공 및 수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금관리자에게 용자신청서 및 물적 담보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용자용도별로 용자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용자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한 자금은 1년이내 단위로 당초 용자기간을 포함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생산, 수집, 판매유통, 가공 및 구매자금은 1년 이내
 2. 시설자금은 3년 이내
- ④ 용자금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자금운용계획 수립시 결정한다.

제6조(보고서 제출)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운용계획서(매년 12월말까지)
2. 결산보고서(회계 연도 종료후 90일 이내)

부 칙 (1997. 11. 23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 11. 2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결정된 자금운영상황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2. 23 제9차 운영위원회)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26 제18차 운영위원회)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9 제18차 운영위원회)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잠업사업자금운영위원회 운영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잠업사업자금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잠업사업자금 운영·관리규정(이하 “자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잠업사업자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 ① 위원장은 잠업사업자금 운용관리규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원회 운영위원을 12월 중에 위촉한다.
- ② 전항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대한잠사회 이사, 감사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조 (회의 개최)

-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12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시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회의성원 및 의결방법)

- ① 회의의 성원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한다.
- ② 회의의 의결은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예치금의 운용)

- ①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는 금융기관에 예치 운용함을 원칙으로하고 자금을 탄력적으로 관리 운용한다.
- ② 금융기관은 제 1 금융권 및 제 2 금융권으로 한다.
- ③ 예치기간은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설정 운용한다.
- ④ 예치기관의 선정은 금융시장 상황과 예치대상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등의 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자금예치에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제 6조 (부실채권의 정리)

- ① 위원장은 잠업사업자금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잠업법의 개정으로 폐지된 잠업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중 부실채권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부실채권의 정리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정리대상채권

- 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경매,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 나. 회수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
- 다. 법적 절차 완결후의 잔존채권으로서 차주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

2. 채권정리 절차

- 가. 정리대상채권은 원리금 전액정리 채권과 이자감면정리채권으로 구분하며 잠업사업자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나. 이자감면 정리대상 채권에 대하여 원금에 대한 물적담보 또는 금융기관 지급 보증서로 신규융자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 다. 전항에 의한 융자금회수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기간내에 회수가 안될 경우는 타채권에 우선하여 법적절차에 따른 경매, 강제집행 등의 회수방법을 강구한다.

제 7조 (대손충당금 편성)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위원장은 대손충당금을 설정 정리한다.

제 8조 (여비 및 수당 지급) 위원회 참석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조 (기타 사항)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 및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998. 2. 12 제정)

이 요령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23 제9차 운영위원회)

이 요령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26. 제18차 운영위원회)

이 요령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잠업사업자금 용자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잠업사업자금 운용·관리규정 제 5조에 의한 잠업사업자금 (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용자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용도와 대상자)

① 자금의 용도별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잠사류생산, 구매 및 시설자금 : 상묘, 잠종, 잠견, 생사류, 부잠사류를 생산하는 자
2. 잠사류수집 및 가공자금 : 잠견, 및 부잠사류를 수집 또는 가공하는 자
3. 잠사류수출자금 : 잠사류를 직접 수출하는 자
4. 잠사류판매유통자금 : 양잠산물의 생산·유통업체

② 대한잠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잠업사업자금에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대상자의 자격)

1. 채무자는 제 2조의 업을 경영하는 법률행위 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으로써 자산능력과 생산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2. 법인은 법령, 정관, 규약, 등기부등(초)본 등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 대표자의 자격과 권한, 법인의 사업목적 등이 확실하여야 한다.

제4조(용자조건)

1. 제2조 1항에 의한 자금의 용자시 물적담보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에 의하거나 용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자금관리자가 판단하는 물건의 담보
2. 제2조 2항의 용자시 대한잠사회 이사회 기체의결서

제5조(연대보증인) 잠업사업자금 운용·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대출시 제 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하게 한다.

제6조(용자금이자율) 용자금의 이자율은 잠업사업자금운영위원회에의 자금운용 계획수립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이자계산방법)

1. 용자금의 이자계산은 원금에 이자율과 기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약정 이율이

년리로 되어 있을 경우 이를 일면으로 환산할 때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계산한다.

2.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 일 때에는 익일까지 계산해 이자를 받는다.

3. 어음대출을 개서할 때에는 겹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개서분의 이자계산은 개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선취이자의 환급) 선이자를 받은 용자금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회수 다음날부터 회수한 용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9조(연체이자) 용자금에 대한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자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10조(이자계산단위) 용자금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산출된 이자액에 대한 원미만의 끝 수는 버린다.

제11조(채권보존에 대한 비용부담) 근저당권의 사정에 필요한 비용과 권리 보전을 위한 제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한다.

제 2 장 용 자 형 식

제12조(용자형식) 용자금은 어음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13조(용자의 방법) 용자를 할 때에는 채무자를 발행인으로 하여 자금관리자를 수령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받는다.

제14조(어음거래약정서) 용자를 할 때에는 채무자로부터 어음거래약정서를 받는다.

제15조(어음약정기간) 어음대출의 약정기간은 생산 및 운영자금은 1년이내, 시설자금은 3년 이내로 하고 어음의 지급일은 약정기간내로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이자후취) 용자금에 대한 한달분의 이자를 후취한다.

제17조(생산능력의 평가기준) 전조에 의한 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아래의 자로 한다.

1. 법인 : 잠업사업자금의 연체용자금이 없으며 다음의 기준에 달하는 자

가) 상장법인 : 최근 3개월내에 주식이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나) 비상장법인 : 자본금 10,000천원 이상으로 아래의 재무제표 7점 이상인 업체로써 인정되는 자.

측 정 항 목	평 가	
	2 점	1 점
1) %	%	%
1. 자기자본비율	50이상	업무평균치 이상
2. 유동비율	200이상	" "
3. 당좌비율	100이상	" "
4. 고정비율	100이하	" 이하
5. 고정장기 적합율	100이하	" "
6. 부채비율	100이하	" "
7. 유동부채비율	100이하	" "
8. 고정부채비율		" "
9. 차입금 의존도		" "
10. 매출채권 대 매입 채무비율		" 이상
11. 매출채권 대상(제)품 비율		" ±10
12. 매입채무 대 순운전자본 비율		" 이상
13. 고정부채 대 순운전자본 비율		" 이하
14. 재고자산 대 순운전자본 비율		" "
15. 순운전자본 대 총자본 비율		" 이상

주: 1) 업체평균치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다.

2) 측정항목의 비율이 없을시는 업체 평균으로 평가함.

3) 단수처리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개인 : 잠업사업자금의 연체융자금이 없으며 연간재산세 10,000원이상 납부하는 자로써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

3. 양잠협동조합이 잠견수수료 수령권을 위임하고 대출시 전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양잠협동조합이 위임하는 잠견수수료 범위내일 때 한한다.

제 3 장 담 보 물

제 1 절 부 동 산

제18조(담보물의 종류) 자금관리자가 취득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농경지, 산림, 과수원을 제외한 부동산과 유가증권,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으로 한다. 단, 타부동산과 함께 제공되는 농경지, 산림, 과수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19조(담보부동산의 종류) 담보물로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다음에 한한다. 다만, 대지와 건물의 이용상 필요한 부대건물, 또는 권리는 침담보로 취득한다.

1. 대지 : 대지상에 건물이 있을 때에는 대지만을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다.
2. 건물 : 대지와 같이 담보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건물은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다. 단,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다.
3. 공장 : 공장단지 저당 또는 공장저당법 제 7조에 의하여 담보물로 취득할 수 있다.

제20조(근저당권설정계약) 담보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근저당권설정최고금액) 근저당권의 설정최고금액은 융자금의 130% 이상으로 한다.(현행 농협기준)

제22조(근저당권 순위) 근저당권 순위는, 제1순위 취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 선정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후순위 취득도 할 수 있다.

제23조(등기부등본의 확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받아 채권 확보에 대한 확실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는 설정계약수수부에 의하여 채무자와의 수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 2 절 유 가 증 권

제25조(담보유가증권) 담보물로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대한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에 한하여, 유가증권을 담보물로 취득할 때에는 담보 제공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주식의 담보취득방법) 기명주식을 담보물로 취득할 때에는 다음 절차를 취해야 한다.

1. 기명주식이 채무자명의일때는 백지위임장(보증인을 공란으로 한 위임장)과 처분 승낙서를 받거나 채권자로 하여금 백지이서(이서대 상자를 공란으로 한 이서)를 하게 하고 처분승낙서를 받는다.
2. 기명주식이 채무자명의가 아닐 때에는 명의인으로 하여금 백지이서를 하게 하며 처분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3. 전 각호의 위임장과 승낙서에 날인한 인감에 대하여는 주식발행자 (회사)의 주식 대장에 등록된 인감과 부합한다는 증명서가 붙어 있어야 한다.

제27조(주식의담보취득제한) 동일회사에 대한 주식으로써 자금관리자가 담보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총액은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그 회사의 납입자본금과 적립금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유가증권의 질권해제) 제26조의 용자금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질권 설정 해제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29조(담보유가증권 수수) 담보유가증권은 유가증권담보물명세장에 그 내용과 수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유가증권의 최저금액) 유가증권의 담보최저금액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가격을 기준하여 용자금의 130% 이상으로 한다

제 3 절 담 보 물 의 이 동

제 31조(담보물의 멸실, 훼손) 담보물의 멸실, 훼손 기타 사유로써 채권보전에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또는 추가담보물을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담보물의 이동)

1.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담보물에 대한 소재지 변경, 지목 변경, 토지분합 또는 건물의 구조변경, 소유권이전등에 대하여 그 승낙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자금관리자가 담보 물의 이동사항을 알았을때에는 채권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낙한다.

2. 전항의 변경을 승낙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그 실행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서 및 관계서류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화 재 보 험

제 1 절 보 험 계 약

제33조(담보물의 화재보험계약) 담보물로 취득한 부동산중 건물(공장포함)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건물만을 담보물로 취득하였을 때에 화재보험금액은 용자금액의 2할중 이상으로 한다.
2. 건물을 토지와 함께 담보물로 취득하였을 때의 화재보험계약금액은 용자금액에서 토지평가 해당액을 뺀 금액의 2할중 이상으로 한다.
3. 화재보험계약금액은 전 1,2호의 범위내일지라도 건물의 시가를 초과하여 가입하지 못한다.

제34조(침담보물의 보험계약) 침담보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5조(보험계약) 보험계약은 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체결하게 하여 용자금의 상환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 2 절 보 험 금 수 령

제36조(보험금 수령권 양수) 보험금에 대하여는 그 수령권을 자금관리자에게 양도하게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의 뒷면에 동수령권의 양도를 승낙하는 부전을 붙인 유가증권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보험계약조건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조건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특약사항이 자금관리자의 채권보존상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
2. 보험목적물의 이동이 있을 때

제38조(보험금의 청구) 담보물의 소실(일부소실포함)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보험금의 수령) 전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받았을 때에는 제 51조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환급하며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잔존보험목적물로써 하되 용자잔액에 대한 채권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용자금을 회수하거나 추가담보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용자금의 대출 및 회수절차

제 1절 용자금의 신청

제40조(용자승인) 자금관리자가 승인신청을 할 시는 용자대상자 전체로부터 연간 용자소요액신청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업종별 한도액을 설정하고 자금운영계획서와 함께 운영위원회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용자금의 배정) 자금관리자는 용자대상자 전체와 협의하여 업종별 용자금한도액 범위내에서 용자대상자별 용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용자금의 신청) 용자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용자가 가능한 것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중 필요한 것을 신청하게 한다.

1. 용자금 신청서
2. 채무자와 보증인 인감증명서
3. 정관규약 및 등기부 등본
4. 이사회 결의서(법인의 경우)
5. 재무제표(법인의 경우)
6. 대지 또는 환지증명서
7. 기타 참고될 서류

제43조(담보물 감정) 담보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금관리자 명의로 감정을 의뢰한 한국감정원의 감정서로써 처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기타 금융기관의 감정서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1. 감정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 2 절 용 자 금 대 출

제44조(징구서류) 용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다음 서류중 필요한 것을 받아야 한다.

1. 어음 및 어음거래약정서
2.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3. 담보제공승락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45조(용자금액의 기재와 성명) 어음의 금액과 채무관계자의 서명은 자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명판을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제 3 절 용 자 금 의 회 수

제46조(상환기일 예고) 용자금의 상환기일 1개월 이전에 용자금상환기일 예고장을 보내야 한다.

제47조(상환독촉) 용자금에 대한 상환독촉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상환기일 경과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상환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2. 상환기일 2개월이 경과하여도 채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최종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3. 최종독촉장을 발송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법원에 대하여 담보물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제48조(경매신청의 취하)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경매신청내용과 연계된 용자원리금을 상환하였을 때에는 경매신청을 즉시 취하한다.

제49조(지급명령신청취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비용과 연계된 용자원리금을 상환하였을 때에는 동신청을 즉시 취하한다.

제50조(채권보전) 법원의 결정에 의한 배당액이 자금관리자의 총채권액에 미달될 때에는 채무자의 기타 재산을 가압류조치 하여 미회수액을 보존토록 한다.

제51조(용자금회수정리순서) 용자금의 회수는 지급한 제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에 의하여 회수한다. 다만, 용자금회수를 위해 경매처분을 비롯해서 모든 최종적인 법적절차를 필하였으시는 원금 정리를 우선할수 있다.

제52조(용자금전액 회수시의 처리) 용자금 전부를 회수하였을 때에는 어음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근저당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보험금수령권 양수해지에 관한 서류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제 53조(근저당권일부해지청구) 용자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근저당권의 일부 해지청구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해제청구의 사유
2. 해제담보물과 잔존담보물과의 평가
3. 잔존담보물 만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한가의 여부
4. 기타 채권확보에 미치는 영향

제54조(근저당권일부해제) 전조에 의한 조사결과 근저당권의 일부를 해제하여도 무방할 때에는 근저당권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 4 절 채 무 관 계 자 의 이 동

제55조(채무자사망시의조치)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호적등본을 받아 상속인을 확인하고 그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승계를 받도록 한다. 사망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상속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56조(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채무자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용자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다음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의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대리하게 한다.
2. 한정치산자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동의하게 한다.

제57조(채무자의 파산선고와 법인의 청산합병)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또는 법인의 청산, 합병 등의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채권신청서를 제출하여 채권보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8조(채무자의사망또는파산선고)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사망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으로 바꾸어야 한다.

제59조(채무자 및 보증인의 이동신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개명, 개인, 개판변경 및 폐지, 주소변경, 명칭변경, 대표자변경, 대리인변경 및 폐지등 변경사실이 있을 때에는 각각 신고서를 받아 관계서류에 변경사항을 기입하여야한다.

부 칙 (1998. 2. 12 제정)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23 제9차 운영위원회)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2. 19 제12차 운영위원회)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26 제18차 운영위원회)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9 제22차 운영위원회)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대한잡사회 임원선거 규약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 규약

(정관 제13조 ⑤항 규정)

사단법인 대한잠사회

2011년 3월 현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회장·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및 선거권)

- ① 선거일공고일 현재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선거인으로 한다.
- ② 대의원 명부에 등재된 업종별 대의원은 임원 선거권을 가지며, 대의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3조(선거일)

- ①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25일부터 7일 사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정기총회일로 한다.
- 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임원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잡사회에 선거관리위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사 또는 대의원 중에서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위촉은 해당선거일 20일전까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개월간으로 하며 임원 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선거인 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및 선거관련 분쟁조정
 4. 투표의 유·무효에 대한 판정

5.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및 투.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참사회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의사진행사항 및 그 결과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③ 참사회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교통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장 선 거

제6조(피선거권)

- ① 대한참사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본회 회원인 양잠농가, 양잠, 상묘, 잠종, 제사 업종단체의 회원 또는 대한참사회 정관(이하 “정관”이라한다) 제13조 규정에 의거 회원 외에서도 선임 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선거일공고일 현재 참사회에 대하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자
 7. 총회에서 해임의결된 자로서 해임의결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임원 임기만료일 현재 공무원의 직을 사직한지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회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쫓겨난 때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자
 9.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참사회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 ③ 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대한참사회장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제7조(선거공고) 회장은 선거일전 7일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공고 및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일
3. 선거일시 및 장소
4. 피선거권자
5. 후보자등록접수장소
6. 후보자등록기간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후보자등록기간)

- ①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 5일후부터 3일간으로 한다. (2010. 2. 24. 개정)
- ② 제1항의 후보자등록기간내에 후보자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3일간 연장하고 선거일을 3일 연기하여 이를 즉시 공고하고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지서식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잠사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심사 및 접수)

- ①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주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접수 후에 자격없음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구비되었으나 등록신청서류에 경미한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 ④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시간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 ⑤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한다.

제11조(등록취소)

- ① 후보자는 선거일전일까지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본인이 직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신청이 있을경우 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 ④ 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표.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회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고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운동)

- ① 이 규약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 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③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서신·전송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시키거나 철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선거방법 및 선거의 진행)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제1항의 회장을 선출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총회 회의중 이사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 ③ 의장은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를 소개한다.
- ④ 후보자는 제1항의 후보자소개시 대한감사회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5분내에 간략히 발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투표, 개표 관리자 각 2인을 지명하여 투표, 개표 사무를 담당케 한다.

제14조(투표 및 개표방법)

- ①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대의원에게 교부한다.
- ② 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를 한다.
- ③ 선거인은 투표시각까지 총회장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 ④ 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제15조(무효투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외에 “⊗”표를 추가한 것
 6.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되거나 총첩 기표된 것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붙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16조(당선인 결정)

- ①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최다수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또는 당선이 무효로 된 때
 2. 선거의 전부무효판결이 있을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회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당선의 통지 및 공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의장은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을 공고한다.

제19조(임기개시 및 만료일)

-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 개시일은 3월 1일부터 개시하여 2월 말일자로 만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임기 개시전에 재임중인 회장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 시점이 선거기간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외의 경우의 이사·감사 임기개시일은 3월 1일부터 개시하여 2월 말일자로 만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선거기록)

- ① 의장은 선거·투표 및 개표상황을 기록한 선거기록을 작성하고 위원 및 관리자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록과 의사록은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회장의 재임기간동안 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서 회장의 재임 기간 이상 계속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회에서 보관한다.

제3장 이사, 감사 선거

제21조(피선거권)

- ①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는 이사, 감사는 사단법인 한국양잠연회, 사단법인 한국상모협회, 사단법인 한국잠종협회, 사단법인 한국생사수출입조합의 회원이어야 하며, 양잠 이사의 경우 정관 제21조 2항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6조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공무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제22조(선거방법)

- ①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 감사의 수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이사, 감사를 선출할 때에는 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선거공고) 회장은 선거일전 7일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공고 및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이사의 정수 또는 감사의 정수
2. 선거일시 및 장소
3. 후보자등록 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후보자 등록)

- ① 감사는 양잠분야에 1명, 상묘, 잠종, 제사분야를 합하여 1명씩 2명을 선출하며 총회시 대의원의 호천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이사 중 양잠 이사는 사단법인 한국양잠연합회장이 대한잠사회 정관 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별로 배분된 인원의 양잠 이사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는 것으로 후보자 등록이 되는 것으로 한다.
- ③ 사단법인 한국양잠연합회장은 지역별로 배분된 임원의 양잠이사 후보추천시 각 지역내의 도간에 소외감이 없도록 배려하여 선임되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제25조(투표 및 개표방법)

- ①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 ② 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기표하며, 선거인이 기표할 이사, 감사의 수는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 ③ 선거인(대의원)은 투표개시시각까지 총회장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 ④ 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제26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한다.

1.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 다만, 제15조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표로 하지 아니한다.
2.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경우

제27조(당선인의 결정)

- ① 임원은 선거인(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며 그래도 과반수의 득표에 실패하면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② 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를 못하여 임원선출이 안될 경우 해당 추천인은 다른 사람을 이사회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1항의 투표절차를 거친다.
- ③ 감사 후보자가 투표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구두호천에 의한 후보추천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실시 감사를 선출한다.

제28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 ① 제1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임원의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② 임기중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궐위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임원의 수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궐위된 임원의 수가 임원정수(회장을 포함한다) 2인 이내인 경우로서 궐위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이내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9조(준용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규정은 이사, 감사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당일결정) 이 예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당일 총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구비서류 일람표

구 분	부 수	발 급 자	비 고
1. 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1 부	본 인	서식 1
2. 추천서	1 부	대의원	서식 2
3. 연체채무유무확인서	1 부	대한잠사회	서식 5
4.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부	해당 기관장	

(주) 구비서류의 서식은 회장이 따로 소정양식 정함.

[서식 제 1 호]

회장후보자등록신청서

1. 성 명 : (한 자 :)
2. 주민등록번호 :
3. 생 년 월 일 :
4. 주 소 : (전화번호 :)
5. 학 력 :

6. 경 력 :

년 월 일 실시하는 임원(회장) 선거에 있어 관계서류를 갖추어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한잡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1. 추천서 1통
2. 연체채무유무확인서 1통(대한잡사회)
3. 퇴직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서식 제 3 호]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귀 하

귀하의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함.

아 래

1. 접수일시 :
2. 접수번호 :
3. 접수조건 :

4. 참고사항 :

가. 접수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접수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자동 취소됨.

나. 등록기간 만료일 18:00 시에 후보자 기호추첨이 있으니 반드시 본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첨에 참석치 않을 시에는 대리 추첨합니다.

년 월 일

대 한 잠 사 회
선거관리위원장 (인)

주: 제3항의 접수조건은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9조제4항에 의한 조건부 접수일 경우에 그 조건을 기재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을시는 "없음"이라 표시한다.

[서식 제 4 호]

공 고 제 호

회장 후보자 등록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임원 선거에 있어 회장, 이사, 감사 후보자로서
다음의 자가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대 한 잠 사 회
선거관리위원회

다 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 주: 1. 기호추첨번호 순서대로 기재한다.
2. 후보자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병기한다.

[서식 제 5 호]

연체채무 유·무 확인서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년 월 일 실시하는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인 위의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체채무 유·무를 확인합니다.

<기준일 : 년 월 일>

구 분	내 역		확 인
유	연체금액	연체기간	(인)
무	연체사실 없음		(인)

년 월 일

대 한 잠 사 회 (인)

원원잠종 생산 및 검사관련 법규

농촌진흥법

[시행 2010. 1.25] [법률 제9957호, 2010. 1.25, 일부개정]

제2조(사업의 정의)

①이 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3. 주요우량작물·채소종자·누에씨, 뽕나무묘목, 화훼종묘, 우량과수의 묘목, 유용미생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작물과 가축전염병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11.23] [대통령령 제21843호, 2009.11.23, 일부개정]

제14조(직무)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업과학원"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농촌자원, 생물자원, 농산물안전성, 농업용 에너지 및 생산자동화,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개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정성, 농업유전자원 이용관리,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산업화 등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원잡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2호 : 양잠·양봉기술의 개발 및 원원잡종의 생산·보급

제18조(농업생물부)

제②항 :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호 : 양잠·양봉 기술의 개발 및 원원잡종의 생산 보급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0. 6. 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6호, 2010. 6. 1, 일부개정]

제13조(농업생물부)

제⑤항 : 잠사양봉소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4호 : 우량 원원잡종의 생산 및 보급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2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19조 (농산물의 검사)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구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의 항목·기준·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검사판정의 실효)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8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제19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4.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고의로 바꾸는 행위
5.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

제3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구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5.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8.11] [대통령령 제22332호, 2010. 8.11, 타법개정]

제28조 (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구매하거나 생산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구매하는 농산물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제28조제2항관련)

1. 정부가 구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구매하는 농산물
 - 가. 곡류 : 벼·겉보리·쌀보리·콩
 - 나.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 다. 과실류 : 사과·배·단감·감귤
 - 라.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 마. 잡사류 : 누에씨·누에고치
2. 정부가 수출·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수입하는 농산물
 - 가. 곡류
 - (1) 조곡 : 콩·팥·녹두
 - (2) 정곡 : 현미·쌀
 - 나.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 다.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3. 정부가 구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 곡류 : 현미, 쌀, 보리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2010. 8.11, 타법개정]

제25조 (농산물의 검사항목 등)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항목은 포장단위 당 무게, 포장자재, 포장방법 및 품위 등으로 하며, 검사대상 품목별 검사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검사방법)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전수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하며, 시료의 추출, 계측, 감정, 등급판정 등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같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수수료) ① 법 제32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농산물의 검사신청,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농산물의 검정신청,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별표 6]

농산물검사 유효기간(법 제23조관련)

종류	품목	검사시행시기	유효기간 (일)
곡류	벼·콩	5.1~9.30	90
		10.1~4.30	120
	겉보리·쌀보리·팥·녹두·현미·보리쌀	5.1~9.30	60
		10.1~4.30	90
	쌀	5.1~9.30	40
		10.1~4.30	60
특용작물류	참깨·땅콩	1.1~12.31	90
과실류	사과·배	5.1~9.30	15
		10.1~4.30	30
	단 감	1.1~12.31	20
	감 굴	1.1~12.31	30
채소류	고추·마늘·양파	1.1~12.31	30
잡사류	누에씨	1.1~12.31	365
	누에고치	1.1~12.31	7
기타	농림부장관이 검사대상 농산물로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검사유효기간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2]

수수료(시행규칙 제46조제1항관련)

7. 농산물 검사수수료

종류별	품목	중량	단위	수수료(원)
곡류	○ 쌀	40kg	대	30
	○ 녹두	40kg	대	30
	○ 기타 곡류 전품목	40kg	대	20
서류	○ 전품목	40kg	대	20
특용 작물류	○ 참깨	40kg	대	40
	○ 기타 특용작물 전품목	40kg	대	20
과실류	○ 전품목	15kg	상자	20
채소류	○ 고추	20kg	대	30
	○ 기타 채소류 전품목	20kg	대	20
잡사류	○ 누에씨	-	-	없음
	○ 누에고치	10kg	-	20
수입 농산물류	○ 정곡	1톤	-	70
	○ 기타 수입농산물류 전품목	1톤	-	60

주)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수수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농산물 검사기준

[시행 2009.8.25]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9-188호, 2009.8.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품위검사규격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규격)

③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

24. 누에씨

등 급	기 준	
합 격	나방검사시	누에알검사시
	나방검사결과 병독이 발견되지 않은 누에씨	누에알 검사결과 병독이 발견되지 않은 누에씨

【기타조건】

- ① 검사과정에서 나방 또는 누에씨를 분실하였거나, 혼합되어 구분할 수 없는 누에씨는 불합격으로 한다.
- ② 불합격된 누에씨는 전량 소각 폐기하여야 한다.

【정의】

- ① 나방검사라 함은 누에씨의 어미나방에 대하여 병독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 ② 누에알 검사라 함은 누에알을 부화시킨 후 개미누에에 대하여 병독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 ③ 병독이라 함은 잔알이병원체를 말한다.

【 검사단위의 구성】

- ① 검사단위의 구성은 다음표와 같이 한다.

원원누에씨	원누에씨	보급누에씨	누에알 검사
5나방 단위	28나방 단위	30~40나방 단위	상자당 200알

- ② 보급누에씨의 나방검사는 소잠구의 크기의 따라 아래 표에 의거 검사대상나방수를 정하여 검사하되 추출된 나방에서 병독이 발견된 경우 또는 소잠구별 누에씨 생산량이 계획량의 70% 미만인 경우는 모든 나방을 검사하여야 한다.

소잠구의 크기	검사대상나방수의 비율	소잠구의 크기	검사대상나방수의 비율
1,400나방 이하	100%	8,401~14,000나방	60~40%
1,401~4,200나방	100~80%	14,001~28,000나방	40~20%
4,201~8,400나방	80~60%	28,001나방 이상	20~10%

누에장려품종지정 및 공급요령

(개정 2009.8.24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107호)

제8조(누에씨의 안전한 보급)

- ① 누에씨 생산 및 검사를 관장하는 행정기관(국립잠사기관) 또는 도지사의 소속 기관(도잠사기관)은 생산한 원원누에씨 또는 원누에씨를 누에씨 생산업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누에씨생산업자의 누에씨 검사신청이 있으면 무료로 누에씨 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누에씨 검사기준은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며 검사방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고시에 의한다

제9조(누에씨의 수급계획 및 실적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해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 생산계획량과 누에사육계획량을, 당해연도의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생산실적을 매년 12월 말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해의 원원누에씨 품종별 소요량을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농업과학기술원장은 매년 1월말까지 원원누에씨 생산계획량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 생산계획량을 기초로 하여 누에사육예상량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누에씨 수급계획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농업과학기술원장은 전연도의 원원누에씨 생산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원원누에씨 공급실적은 매년 4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누에씨생산기술지도) 농업과학기술원장은 누에씨 생산기관이나 누에씨 생산업자를 대상으로 누에씨 생산 및 검사에 대한 지도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